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10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민형배 · 이개호 · 김현정
소병훈 · 정동영 · 김동아
박지원 · 안도걸 · 최혁진
김성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에게”를 “시민에게”로, “국민의”를 “시민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의”를 “시민의”로, “국민건강”을 “시민건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시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시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증진”을 “시민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증진”을 “시민건강증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건강증진”을 “시민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민건강증진”을 “시민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민건강증진”을 “시민건강증진”으로 한

다.

제5조의 제목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에”를 “시민건강증진에”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건강증진시책”을 “시민건강증진시책”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민건강증진”을 “시민건강증진”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증진”을 “시민건강증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민건강증진”을 “시민건강증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국민건강증진”을 “시민건강증진”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國民健康”을 “시민건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민건강의식”을 “시민건강의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민에”를 “시민에”로, “국민건강”을 “시민건강”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5호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9조의4제3항제4호 전단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1조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을 “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을 “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을 “시민건강증진”으로 한다.

제12조의4 중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을 “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을 각각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시민건강영양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을 각각 “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시민영양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시민영양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영양조사의”를 “시민영양조사의”로, “국민영양조사와”를 “시민영양조사와”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1조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國民健康增進基金”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시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관리사업”을 “시민건강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6. 시민영양관리사업

제27조제1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시민영양조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설치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설치된 시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 「시민건강증진법」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시민건강증진법

④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한다.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⑧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시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시민건강증진부담금

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⑩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을 “시민건강증진기금(이하 “시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다목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⑫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시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한다.

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0조의 제목 중 “국민건강”을 “시민건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시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⑯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나목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⑰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시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한다.

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⑲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시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증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국민건강증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국민건강증진법</u>	<u>시민건강증진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민에게</u>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u>국민의</u>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시민에게</u> ----- ----- ----- ----- ----- <u>시민의</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국민건강증진사업</u> ”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u>국민의</u>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1. -- <u>시민건강증진사업</u> ----- ----- ----- ----- <u>시민</u>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u>국민의</u> 관심을 높이고 <u>국민건강</u> 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3조(책임) ① ----- ----- <u>시민의</u> ----- ----- <u>시민건강</u> ----- -----.
② 모든 <u>국민</u> 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	② ----- <u>시민</u> ----- -----

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

제3조의2(보건의 날) ① -----
-----시민-----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
-----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시민건강증진종합계획-----

-----.
-----.

② -----
-----.

1. 시민건강증진-----

2. 시민건강증진-----

3. 시민건강증진-----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u>국민</u>	4. ----- <u>시민</u>
<u>건강증진기금</u> 의 운용방안	<u>건강증진기금</u> -----
4의2. (생략)	4의2. (현행과 같음)
5. <u>국민건강증진</u> 관련 통계 및	5. <u>시민건강증진</u> -----
정보의 관리 방안	-----
6. 그 밖에 <u>국민건강증진</u> 을 위	6. ----- <u>시민건강증진</u> -----
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u>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u>	제5조(<u>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u>
<u>회</u>) ① <u>국민건강증진</u> 에 관한	<u>회</u>) ① <u>시민건강증진</u> 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보건복지부에 <u>국민건강증진정</u>	----- <u>시민건강증진정</u>
<u>책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u>책심의위원회</u> -----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② -----
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u>국민</u>	2. ----- <u>시민</u>
<u>건강증진기금</u> 의 연도별 운용	<u>건강증진기금</u> -----
계획안·결산 및 평가	-----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	3. -----
련되는 주요 <u>국민건강증진시</u>	----- <u>시민건강증진시</u>
<u>책</u> 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u>책</u>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
요청하는 사항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생략)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 5.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민건강증진-----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
-----시민건강증진기금-----
시민건강증진사업-----

-----.

② -----
-----.

1. 시민건강증진-----

2. ~ 5. (현행과 같음)

6. <u>국민건강증진사업</u> 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u>시민건강증진사업</u> ----- -----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u>국민건강증진</u> 과 관련된 연구 과제의 기획 및 평가	9. <u>시민건강증진</u> ----- -----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u>국민건강증진</u> 과 관 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2. ----- <u>시민건강증진</u>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장 <u>國民健康</u> 의 관리	제2장 <u>시민건강</u> 의 관리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 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 을 조성하고, <u>국민</u> 이 건강생활 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 강생활의 지원 등) ① ----- ----- ----- <u>시민</u>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u>국민건강의식</u> 을 잘 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 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 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 ----- <u>시민건강의식</u>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국민</u> 에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 <u>시민</u> 에

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
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
보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
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
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
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
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생 략)

③ (생 략)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
지 또는 제한)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
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시민건

강-----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시민-----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
지 또는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4. 시민-----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
-----시민-----
-----.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

시민-----

-----.

② -----
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

-----.

③ -----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
시민건강증진-----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

-----시민건강증진사업
관련-----

--.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 ----
-----시민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3. (생략)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

제15조(영양개선) ① -----

-----시민-----

-----시민-----

-----.

② -----시

민-----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시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시민-----

-----시민

-----시

민-----

-----.

② -----

시민영양조사-----

-----.

③ 시민영양조사-----

-----.

④ 시민영양조사의-----

-----시민영양조사와-----

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국민</u> 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 <u>시민</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국민</u> 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 <u>시민</u>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국민건강증진사업</u> 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 <u>시민건강증진사업</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검진) ----- ----- -----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u>국민의 건강증진사업</u>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u>國民健康增進基金</u>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국민건강증진사업</u>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국민건강증진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23조(<u>국민건강증진부담금</u>의 부과·징수 등) ① ~ ⑦ (생략)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u>시민</u>----- -----.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 ----- ----- -----<u>시민</u>----- ----- ----- -----. 제3장 <u>시민건강증진기금</u>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 ----- -----<u>시민건강증진사업</u>----- -----<u>시민건강증진기금</u>-----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u>시민건강증진부담금</u>의 부과·징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1. ----- -----
---	--

<u>국민건강관리사업</u> 2. ~ 5. (생략) <u>6. 국민영양관리사업</u> 7. ~ 11. (생략) 12. 그 밖에 <u>국민건강증진사업</u> 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②·③ (생략) 제27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u>국민영 양조사</u>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 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u>시민건강관리사업</u> 2. ~ 5. (현행과 같음) <u>6. 시민영양관리사업</u> 7. ~ 11. (현행과 같음) 12. -----<u>시민건강증진사업</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도·훈련) ① ----- ----- -----<u>시민영양</u> <u>조사</u>----- ----- ----- ----- -----. ② (현행과 같음)
---	---